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Jul 24, 2019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Articles
- III. FAQ
- IV. News
- V. Events

Key Contacts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T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는 K-SOX^(*) Newsletter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SOX: Korea Sarbanes-Oxley Act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한다.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개정('19.6.12)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은 교수)는 지난 2018.7.27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확정 발표한 바 있으며, 2018.11.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도 발표한 바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의회신(FAQ)을 제공하고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의 개정에 맞추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를 개정하여 2019년 6월 12일 발표함
- 구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의 목차는 아래와 같음
 - ▷ 모범규준의 목적 및 적용
 - ▷ 내부회계관리제도 일반
 -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또는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다운로드](#)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국내 법제도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또는 위반 시 제재

-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또는 위반에 대한 제재 및 불이익에 관심이 높아진 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함

평가자 구분		제재 대상	제재 내용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임직원	기본조치 가중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회사, 임직원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평가·보고 등의 의무 위반 시		회사	외부감사인 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감사(위원)을 포함한 임원, 회계업무 담당자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한 자		회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감사(위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외부감사인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회사	감리, (감리 후) 경고·주의·시정 권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코스닥 기업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2개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코스닥 기업	상장실질심사, 심사 후 상장폐지도 가능
2개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회사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계약 해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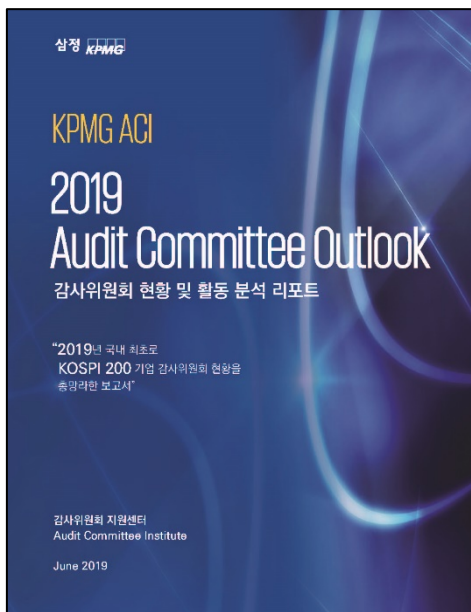
- 이 외에도, 제재나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적정한 회사에 대하여 주기적지정제에서 제외해주는 유인을 제공함
 -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 또는 검토의견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제 대상에서 제외
 - 단, 감사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Back to top](#)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2019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지난 2018년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을 비롯하여 新외부감사법 시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사업보고서 내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정보 확대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변화들이 있던 해였습니다.

이 같은 법제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국내 최초로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다방면에서 조사 및 분석하여 본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치: 감사위원회 vs. 감사
2. 감사위원회 구성
3. 감사위원회 운영
4.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의결권 행사
5. 감사위원회 안건

[출처]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Back to top](#)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의 독립성 보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19.6.21)

Q.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7에 따르면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함

문단 18은 고유위험과 통제절차와 관련된 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독립성이 낮은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함

이에 대하여 문단 19는 평가자의 독립성이 낮을 경우 또 다른 독립적 평가자의 관여를 통하여 독립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함

그렇다면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해당 통제 절차에 대해서 독립적인 평가자가 보완해야 하는가?

A. 핵심통제가 아니면 독립성 수준이 낮은 평가자가 평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완통제를 마련할 필요는 없음. 평가자별 독립성에 따른 평가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음

평가자 구분

독립성

평가유형

평가 가능 여부

	(객관성) 수준		핵심통제 평가	비핵심통제 평가
통제운영자	매우 낮음	자가평가	불가	가능
통제운영자와 동일한 부서 인원	낮음	자가평가	보완 조치 시 가능	가능
통제운영자와 다른 부서 인원	낮음과 중간 사이	독립적인 평가	보완 조치 시 가능	가능
별도의 전담부서	중간 또는 높음	독립적인 평가	가능	가능
외부 아웃소싱	높음	독립적인 평가	가능	가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61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통제 운영의 결과를 확인하는 경영진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활동들은 자가평가 절차와 통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성과지표를 분석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자가평가는 다양한 수준의 객관성을 가진 인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러 유형의 절차를 포함한다. 자가평가는 평가 대상 통제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인원이 수행하는 평가는 물론 평가 대상 통제의 운영책임이 없는 경영진 등이 실시하는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가평가가 제공하는 증거자료의 성격은 평가자나 평가 수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통제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인원에 의해 수행된 자가평가의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평가자의 낮은 객관성으로 인하여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므로 핵심통제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17 경영진은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란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와 독립적인 제3자를 의미한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을 구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예를 들어, 내부통제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18 그러나, 고유위험과 통제절차와 관련된 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의 평가자의 독립성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전사적 수준 통제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위험평가 결과와 각 통제활동의 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한다.

19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의 평가 및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평가는 낮은 수준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완될 수 있다.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문서검사 및 재수행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일정 부분을 검토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모집단과 샘플을 직접 선정하여 전달
- 테스트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성과 반영이 이뤄지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의 소속 및 구성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9.7.4)

Q.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은 반드시 내부회계관리제 소속 조직이어야 하는가? 당시의 경우 CEO 직속의 내부감사팀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또한, 관리/운영 부서와 평가/보고 부서는 반드시 한 부서로 통일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관리/운영은 회계팀이, 평가/보고는 내부감사팀이 수행할 수 있는지?

A. 외부감사법령 또는 모범규준 등에서 전담조직의 소속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전담조직을 누구의 직속 또는 부속으로 둘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단, 전담조직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소속될 경우 평가 조직이 경영진의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내부감사조직 내에서 경영진의 평가에 참여한 인원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부 조직 또는 전담부서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일반적인 경우로 가정하면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부통제를 운영하는 부서는 해당 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임. 따라서 전담부서는 보통 설계평가와 운영평가를, 해당 통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화관리를 수행함

예를 들어 월1회 정기적으로 재고담당자가 타처보관재고를 재고실사하는 통제활동이 존재한다면 재고담당자는 내부통제를 운영하는 책임자이며, 내부회계전담팀은 해당 통제에 대하여 설계평가와 운영평가를 수행하는 설계·운영 평가 책임자임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43. 특정 부서가 경영진의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외감법 제8조에서는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운영실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96)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조직이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조직이 작성한 평가 계획과, 수행한 절차 및 결과 등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였다면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조직(본 예시에서는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예: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책임자의 임면권, 성과평가 권한 등)을 마련하거나, 내부감사조직 내에서 경영진의 평가에 참여한 인원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ack to top](#)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국내 동향

- 기업 재무담당 6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부족" [연합뉴스]
-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 교육 등으로 역량 강화 나서 [동아일보]
- 회계감독 제재에서 사전지도 위주로...감리주기 7년 단축 [연합뉴스]
- 작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기재미흡 27.6%...전년비 6.1%p 개선 [뉴스웨이]
- "투명회계는 늘 지켜야 할 가치"...내부감사 독립성 대폭 강화 [매일경제]
- 페퍼저축은행, 감사위 활동 확대...내부통제 강화 [더벨]
- 어니스트앤드, 삼정 KPMG 자문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파이낸셜뉴스]

해외 동향

- Poll shows gaps in integrated risk management [CW]
- Cybersecurity Risks and Controls [The CPA Journal]

[Back to top](#)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사)감사위원회포럼 조찬포럼

-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07:30~09:50
- 장 소: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 내 용 (변동 가능)

Time	Contents	Speaker
7:10 ~	참가자 등록	
7:30 ~ 8:00 [30분]	조찬 실시	
8:00 ~ 8:20 [20분]	축사	금융위원회 공정거래과장
8:20 ~ 9:00 [40분]	세션 1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위원회(안)	김우진 교수 (서울대학교)
9:00 ~ 9:10 [10분]	Coffee/Tea Break	
9:10 ~ 9:50 [40분]	세션 2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	박성배 전무이사 (삼정회계법인)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허세봉 부대표

K-SOX TFT Leader

김민규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김유경 전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용기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도정욱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이성노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전원표 상무	조선, 건설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Back to top](#)

[Privacy](#) | [Legal](#)

kpmg.com/socialmedia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